## 「2025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시행 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린산단의 AX 전환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공용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 실증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자발적 AX 확산 유도를 지원할 『2025년 AX실증산단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6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o 스마트그린산단에 AI를 접목하여 첨단화 기반을 조성하고 산단 내 대·중견·중소기업 협업을 통한 AX(AI Transformation) 활성화
- AI 기반 산업 고도화를 통해 입주기업의 신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산단 맞춤형 AX 선도모델 구축을 통한 자발적 확산 기반 마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 사업내용

- **1** AX 인프라 구축 (1∼4차년도)
  - AI 설비\*(HW/SW), 지원센터 등 구축 유형별 공용 인프라 구축 \* GPU, NPU 등 연산자원, 데이터 서버 및 플랫폼, AI 솔루션 S/W, 기업지원 장비 등
- **②** 기업 AX 실증지원 (1∼4차년도)
  - 산단 입주기업 대상 AI 솔루션 실증을 통해 기업이 AI 도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례 확보 → 자발적 민간확산 유도
- ❸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1차년도)
  - 산단별 AI 수요분석, 혁신역량, 기구축 인프라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산업단지 AX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 4 AX 얼라이언스 (1~4차년도)
  - 산단 내 수요기업, AI 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협력 얼라이언스 구성 및 AX 실증지원 모델 공유를 통해 AX 성과확산

## 2 지원규모 및 대상

- □ 총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2028. 12. 31.까지
-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2025. 12. 31.까지
- ㅇ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 활용 기간동안 최소 5년 이상 성과물을 운영
- □ 공고예산 : 400억 원(2025년 기준)\*
  - \* 컨소시엄당 4년간 정부출연금 140억 원 내외 지원 예정

(단위 : 억 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합계
정부출연금	40	20	60	20	140

- ※ 정부출연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으며, 차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총 정부출연금 규모 및 연차별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 정부출연금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연차별 정부출연금의 5% 이내)가 포함된 금액으로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비 배분율은 매년 협약(산업부↔전담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대상 산업단지

- ㅇ 전국 21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
  - 반월시화, 경남창원, 인천남동, 경북구미, 광주첨단, 전남여수, 대구성서, 부산명지녹산, 울산미포, 전북군산, 충북청주, 충남천안, 전남대불, 경북포항, 대전, 전남광양, 인천주안부평, 부산신평장림, 강원후평, 전북전주, 경남사천

### □ 지원대상

ㅇ 사업 유형 무관 10개 컨소시엄 선정(산단 당 최대 1개 컨소시엄)

### □ 지원내용

o AX 산단 실증 관련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예산 ※ 부자시설의 매압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인테리어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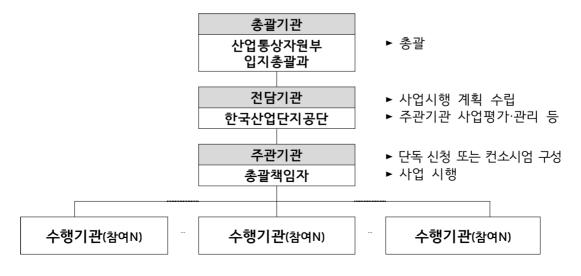
####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140억) 대비 <u>매칭금(지방비 및 민간부담금) 비율 40% 이상</u>
   <u>부담 필수</u> → 컨소시엄당 56억 원 이상 매칭
  - 지방비(광역/기초) 및 민간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납부할 수 있음
  - 민간부담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음
  - ※ 현물 계상은 세부관리지침 제16조(사업비 산정기준) 및 별표 4(사업비 산정 및 사용기준)를 따름
- 모든 컨소시엄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지사)가 수행기관으로 참여 필수
  - 마스터플랜 수립 및 얼라이언스 운영 등에 대해 지역본부(지사)와 협업 필요
  - ※ 인건비/간접비 산정 불가, 해당 산단 내 공단 자산(시설 등)을 현물 매칭 가능
- ※ 기관장은 스마트그린산단사업단장으로 한다
-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재정 자립화를 통한 지속적인 유지·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반영 필수
  - 사업 종료 후, 사업추진(성과활용) 현황을 5년 이상 제공해야 함

## 3 신청자격

#### □ 추진체계

○ 주관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주관+참여 N개)으로 신청 가능



#### □ 신청자격

- o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은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며, 주관기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에 위치해야 함\* \* 본점 또는 분점 소재지 기준
- 1.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4. "공기업"이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 5.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기관
-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 8.「지방공기업법」제2장, 같은 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지방공기업
- 9.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10.「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1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12.「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13. 「민법」제32조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14. 기타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기관

#### □ 참여제하

- ㅇ 정부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본 사업 참여 및 수행 불가
- ㅇ 주관기관(장), 참여기관(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함(접수 마감일 기준)

# 4 상세사업 내용

### 1. 지원개요

- ◇ 대상 산단의 AX가 시급한 산업을 중심으로
  산단별 특성, AX 수준을 고려하여 사업유형을 선택하여
  4가지 필수 과업 수행
- ◇ 전략 업종과 사업유형에 적합한 ① AX 인프라 구축하여
   ② 기업 AX 실증지원을 특화 기획 · 운영하고
   산단공 지역본부와 협력을 통한 ③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현장 중심의 ④ AX 얼라이언스 구성 및 운영

[연차별 과업내용(예시)]



## 2. 사업유형

- 메뉴판 형태로 제시된 AX 지원사업 유형(7개) 중에서 응모 컨소시엄이 지역 산단별 수요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 기획
- 메뉴판 유형은 혼합형으로 신청 가능(1~4개 유형 선택 가능)
- 메뉴판 유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산단AX와 관련성·필요성이 높다고 인정한 과제는 지원 가능
- \* 아래 작성된 유형별 사업 내용은 산단 필요성에 따라 가감할 수 있음

## <지원사업 메뉴판 (7개 유형) >

사업유형	사업내용
① 제조 AI 오픈랩	▶ (개요) AI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연구기관이 AI 기술을 연구, 실증하고 협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방형 실증공간 구축
	<ul> <li>▶ (사업내용)</li> <li>- AI 기반 기업공유형 테스트베드 구축 및 연구 플랫폼 개발</li> <li>- AI 기반 공정개선 실험 및 스마트 제조 기술 적용을 테스트하고, 제조설계/공정 변수를 최적화하는 AI 모델 개발</li> <li>- AI 제조 기술 공동개발 및 소규모 실증 프로젝트를 지원</li> </ul>
	▶ (개요) 공정 설비, 공장 내 설비 레이아웃 등을 가상공간에 구현 하고 AI 시뮬레이션 기술을 활용해 제품 개발, 설비 검증, 공정 최적화를 지원하는 인프라(HW, SW) 구축 및 운영
	※ 경남창원/경북구미/전남여수/대구성서/반월시화/충북청주 (기존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사업 지원지역) 外 지역만 신청 가능
<ul><li>② AX 가상공장</li><li>실증플랫폼</li></ul>	▶ (사업내용) - 제품 개발, 불량 예측, 설비 검증 등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제조 플랫폼 개발 및 지원공간 구축
	* 기존공간 활용 또는 필요시 센터 건축(지방비 등 활용)
	- AI 시뮬레이션 기술(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제품 설계, 공정 최적화, 불량 예측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요) 산단 내 AX기술을 집적한 대표 선도공장을 구축하여 입주기업의 제조혁신 확산과 AX기술 상용화 지원
	* 선도모델 확산(성과활용)을 위한 타 기업의 벤치마킹 지원계획 수립필요
③ AX 대표 선도공장	<ul> <li>▶ (사업내용)</li> <li>① (파일럿플랜트) 실제 공장에 AI 자율제조를 구현할수 있는 실증 공장을 구축해 신제품, 공정 테스트 및 검증</li> <li>② (원격공장) IoT·AI·디지털트윈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공장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하는 시스템 구축</li> <li>* 신청 컨소시엄 필요에 따라 ①파일럿플랜트 및 ②원격공장 기술 개별 적용 또는 통합 적용 (대상 공장은 스마트그런산단 내 소재해야 하며 컨소시엄 참여 필수)</li> </ul>

사업유형	사업내용			
④ 특회망 기반 제조 AI 실증	▶ (개요) 산업단지 내 주요 업종 및 설비·환경 특성 등을 고려 하여 제조공정, 물류, 안전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가능한 특화망 통신(5G, Wi-Fi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조 현장에 실증			
	▶ (사업내용) - 수요 발굴 및 시범 구역 내 특화망 인프라 설계·구축 - 특화망 구현을 위한 운영·관제시스템 개발 - 기업 제조현장 특화망 서비스 실증을 통한 확산모델 도출			
⑤ 디지털트윈 산단관리 실증	▶ (개요) 가상공간 기반의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하고, 산업단지 관리 효율화와 입주 기업의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 공간, 환경 등 분야별 디지털 트윈 특화 서비스 구현 및 산단 내 실증			
	▶ (사업내용) - 모니터링 및 분석 요소 도출 및 데이터 연동방안 설계 - 산단 특성을 고려한 디지털 트윈 특화 서비스 개발 - 실시간 데이터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서비스 운영			
	▶ (개요) 제조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방식의 특화업종 맞춤형 제조AI 서비스(SaaS) 개발 및 기업지원			
⑥ SaaS 기반 제조 AI 서비스	▶ (사업내용) -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 클라우드 기반 AI SaaS(서비스형 AI솔루션) 제공(구독 등) * ex) 공정모니터링, 품질예측, 설비이상 탐지 등 - 산단 업종에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 및 기업지원			
	▶ (개요) 산단내 제조업체가 AI기반의 제조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 하는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기업 AX 수준 진단 <sup>*</sup> , 특화 솔루션 제공, 데모공장 운영 등 ** 수준진단 기준은 전담기관에서 2차년도에 제공			
⑦ AX 종합지원센터	► (사업내용) - 기업의 AI기반 제조혁신을 위한 HW, SW 인프라 구축 - 산단 제조기업 AI 적용 설계, 시뮬레이션, 데이터 분석 등 현장 제조혁신 지원을 위한 솔루션 서비스 개발 - AX 수준진단 기반 전문가 컨설팅 및 기업지원 - 지원센터 내 AI 기반 제조혁신기술 도입·경험 지원을 위한 특화산업 맞춤형 AI 데모공장 구축 및 개방형으로 운영			
	* 매칭 사업비를 건축비가 아닌 HW/SW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 신축보다는 기존 사업으로 구축된 센터, 공간의 활용 권장			

### 3. 세부사업

- ① (AX 인프라 구축) 데이터 수집·저장·연산 인프라 및 센서 설비, 네트워크·통신 인프라, AI 개발·운영지원 공간 및 설비 등 산단별 입주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핵심 인프라 구축
  - \*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인테리어비 등 건축 관련 비용은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 사업제안서에 인프라 도입 및 운영방식, 상세 스펙, 가격 등 필수 제시
  - 선택 유형에 따라 AI 기술을 직접 적용·체감할 수 있는 S/W·H/W 장비를 포함한 실증 인프라 구축과 컨설팅·기술 교류·협업이 가능한 복합 지원 공간 조성
  - 정부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등을 통해 **기구축된 DX·AX 인프라와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프라 구축방안 제시
- ② (기업 AX 실증지원) 산단 입주기업 대상 AI 솔루션 실증\*을 적용, 기업이 AI 도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례 확보 및 성과 관리
  - o 기존 솔루션을 적용한 현장 맞춤형 PoC 성공사례 도출

#### 기업 AI 실증 및 PoC 가능사례

제품·디자인 설계 AI, ▲제조 데이터 AI 적용 예지보전/불량예측/생산최적화, ▲디지털 트윈 적용 생산조건 최적화, ▲품질검사 AI 서비스, ▲AI 에이전트 활용 예측생산 및 생산관리 제어, ▲생성형 AI 활용 작업자 생산 및 품질관리 효율화 지원, ▲특정 설비 AI 자율제조 실증서비스(CNC 가공설비 자율공장 구축 등), ▲산단 대표업종 제조공장 완전 AI 자율제조 공장 구현(다크팩토리) 등

- o 다수 기업 대상 소규모 뿌려주기식 단순 지원은 지양하고 AI 도입 선도사례로 홍보가능한 규모있는 프로젝트성 실증과제 제시 필요
  - \* 단, 대기업이 수혜기업인 경우(선도공장 등) 자부담 40% 이상 부담 필수

- ③ (산단 AX 마스터플랜 수립) 특화업종 기반의 AI 수요분석, 혁신역량, 기구축 인프라 등 제반여건\*을 반영한 산단 AX 마스터플랜 전략\*\* 수립
  - \* 데이터 표준, 네트워크 운영, 디지털 트윈기술 적용 등
- \*\*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 내 마스터플랜의 개략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하며, 선정될 경우 1차년도 기간 내 실제 마스터플랜 수립 진행
- o 산단공 지역본부별 **산단 AX 전략수립 담당자를 배정**하여 자료 제공, 기업 조사, 사업 연계 등을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 ④ (AX 얼라이언스) 산단 내 수요기업, AI 공급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협력 얼라이언스 구축 및 AX 실증지원 모델 공유를 통해 AX 성과 확산
  - \* **수도권 소재 AI 공급기업, AX 카라반 참여기업, 초광역협의체** 등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얼라이언스를 통해 **AX 수준진단, 컨설팅, 수요-공급기업 매칭, 세미나** 등 추진(산단공 지역본부가 공동간사 역할)

# 5 추진일정

□ 선정일정 : 사업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결과통보→협약체결→수행

□ 선정일정 : 사업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결과통보→협약체결→수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예상시기				
사업공고(~40일)	한국산업단지공단	′25. 6. 17.				
<u> </u>						
사업계획서 등 신청·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25. 7. 28.				
<b>↓</b>						
서면평가	한국산업단지공단	~'25. 8월 초				
<u> </u>						
선정평가위원회(발표평가)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5. 8월 중				
<b>↓</b>						
평가결과통보	한국산업단지공단 → 신청기관	'25. 8월 중				
<b>.</b>						
사업계획 고도화	한국산업단지공단 → 우선협상대상자	′25. 8월				
<u> </u>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한국산업단지공단 ↔ 수행기관	′25. 8월				
<b>↓</b>						
산단 AX 마스터플랜수립 착수	수행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지역본부)	'25. 9월				
<b>↓</b>						
연차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수행기관	′25. 12월				
<u> </u>						
2차년도 상세 계획 수립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5. 12월				
<u> </u>						
사업비정산 및 연차점검	한국산업단지공단, 수행기관	′25. 12월				
(계속)	(계속)	(계속)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평가는 필요시 진행됨

# 6 선정평가

#### 1. 선정평가 방법

#### < 선정평가 프로세스 >



### Ⅱ 서면평가

- □ (21개 초과 접수 시)
  - o 평가위원 : 신청기관(주관·참여 포함)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o 평가방법: 사업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기반 서면평가
  - 공고에 명시된 요건(주관기관 요건, 매칭비, 참여제한 여부)과 사업계획 종합 평가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술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 동점일 경우, 평가 기준 중 배점이 높은 ①"사업수행계획", ②"신청기관수행능력",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합산 순으로 선정
  - o 평가결과 : 산단별 1개 컨소시엄 선정(최대 21개 컨소시엄 선정)
  - 70점 미만인 경우 발표평가 제외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오제출\* 시 발표평가 제외
    - \* <신청서 작성 요령> 붙임. 제출서류 확인 요건

#### ㅇ (21개 이하 접수 시)

- 공고에 명시된 요건(주관기관 요건, 매칭비, 참여제한 여부) 충족 여부 판단하여 미충족 시 발표평가 제외
- 필수서류 미제출 또는 오제출 시 발표평가 제외

#### ② **발표평가**

- **평가위원** : 신청기관(주관·참여 포함) 소속이 아닌 전문가 7인으로 구성
- 평가위원회는 2개 조로 운영하여 2일간 평가 진행
- 서면평가를 시행한 경우, 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홀수 순위는 A조, 짝수 순위는 B조로 편성(조별로 각 5개 컨소시엄 선정 예정)
- 서면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추첨을 통해 평가조 결정
- o **평가방법** : 발표평가(발표 20분, 질의응답 35분)
- 사업목적 및 목표, 신청기관 수행능력, 사업수행계획,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
-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합계의 산 술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두 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 동점일 경우, ①정부출연금 대비 매칭비 비율, ②중소기업 참여율 순으로 선정
-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참여 불가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o 평가결과 : 10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평가 차순위 수행기관과 협상 진행

#### ③ 현장평가

- ㅇ 발표평가 시 미흡ㆍ미비 사항 보완계획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 필요시 실시

#### ④ 사업계획 고도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이 구성한 AX 자문단을 통한 사업계획 자문을 시행하여 정책 방향과 부합 하도록 과업 내용 및 지표 보완

## 2. 평가기준

- □ (평가표) 사업 필요성, 사업 추진 가능성, 신청기관 시설 운영 효율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서면평가, 발표평가 모두 적용

〈세부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o 사업공고 및 정책방향과의 부합성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 부합하는가 - 해당 산단 특성 및 산업 현안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5
(10점)	<ul><li>목표 및 세부 계획의 명확성/타당성</li><li>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목표를 수립하였는가</li><li>세부 계획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타당한 구조로 구성되었는가</li></ul>	5
신청기관 수행능력 (25점)	<ul><li>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li><li> 컨소시엄 구성이 사업 목표 달성에 적절한가</li><li> 참여기관 간 협업체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li></ul>	5
	o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총괄책임자 및 핵심 참여자의 보유 역량이 사업에 적합한가 - 실증 경험, 기술 전문성, 참여율 등 인력 구성이 AX에 강점이 있는가	10
	o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 산단 내 수요조사, 기업 수요 기반 실증과제 도출 등 사전 준비가 이루어졌는가 - 인프라, 장비, 공간 확보 등 계획이 구체적이거나 실행 준비가 되었는가	10
사업 수행계획 (40점)	o 사업 목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사업추진 전략이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실행 방안으로 구체화되어 있는가 - 전략에 따른 자원(예산, 인력, 조직 등) 배분과 수행 주체가 명확히 설계되어 있는가	10
	<ul> <li>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사업 추진 여건 구비</li> <li>일정, 인력, 예산 등 자원배분 및 업무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가</li> <li>이행 주체 및 추진방식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li> <li>연차별 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목표 지향적인가</li> </ul>	10
	<ul> <li>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li> <li>세부과업이 전체 사업목표와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는가</li> <li>과업 간 연계성과 단계적 추진 구조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li> <li>기보유 인프라 활용 및 신규 인프라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과업 수행과 적절히 연계되어 계획되었는가</li> </ul>	10
	<ul><li> 적용 기술의 구체성 및 타당성</li><li> 적용 기술이 국내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자립도/확장가능성을 고려하였는가</li><li> 통신 및 데이터 표준 등을 준수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되었는가</li></ul>	5
	o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성과지표가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하게 수립되었는가 - 실증성과의 확산 방안 및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5
사업비 구성 및 기대효과 (25점)	<ul><li>사업 종료 후 산단 AX 활성화 방안과 센터 재정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li><li>사업 종료 후에도 자립 가능한 운영모델이 제시되었는가</li><li>유료서비스, 민간투자 등 지속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되었는가</li></ul>	10
	<ul><li>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li><li>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배분이 적정하게 계획되어 있는가</li><li>세부사업별 투입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의 실현성이 있는가</li></ul>	10
	o 매칭금 유치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매칭금의 확보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5
	합계	100

# 7 근거법령 및 규정

- □ 사업근거
  - ㅇ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 21(사업)
- □ 관련규정 :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을 우선 준용하되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아래 사항을 따름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8 설명회 및 신청방법

- □ 사업설명회 개최
- ㅇ 일 시 : 2025. 6. 20.(금) 14:00~16:00
- ㅇ 장 소 :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KICOX홀
- ㅇ 대 상 : 사업 참여희망 기관 및 기업
- □ 접수기한 : 2024. 7. 28.(월) 15:00限(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 ※ 한국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www.kicox.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
- □ 접수방법 : 대상단지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PDF 전자파일)

## □ 제출서류

- ㅇ 제출서류 일체를 서류별로 스캔하여 대상단지별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접수기한 내 모든 제출서류 송부 완료할 것 (접수기한 이후 제출 자료 수정 및 추가자료 제출 불가)
  - USB 접수 불가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ㅇ 원본이 아닌 모든 서류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b>서류명</b> ① 사업 신청서	<b>서식</b> 서식1	<b>대상</b> 주관	<b>비고</b> · 전자파일(PDF) 제출
② 법인정관(원본대조필 날인)	-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③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④ 3개년 <u>(`22~`24년)</u>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확인원)	-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 제출서류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직전 연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⑤최근 3년간(`22~`24년) 투자계약서 사본	-	주관+참여 공통	<ul> <li>전자파일(PDF) 제출</li> <li>타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현금</li> <li>투자한/투자받은 경우 제출</li> <li>(별도양식 없음)</li> </ul>
⑥확약서	서식2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⑦사업계획서(제안서)	서식3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⑧수행기관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4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⑨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5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⑩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서식6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⑪수행기관 현금·현물 출연 확약서	서식7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⑩지방자치단체 현금 현물 출연 확약서	서식8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③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_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⑭수행기관 책임자의0 재직증명서	_	주관+참여 공통	· 전자파일(PDF) 제출
⑤선정평가 발표자료	_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사업내용 협의서	서식9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⑪사업신청관련 기타 증빙자료 (필요시)		주관	· 전자파일(PDF) 제출

## □ 지역별 문의처

번호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1	경기반월시화	박래혁 과장	070-8895-7517	park@kicox.or.kr
2	경남창원	이지희 차장	070-8895-7809	ejihee@kicox.or.kr
3	인천남동	김정민 차장	070-8895-7452	nogwang@kicox.or.kr
4	경북구미	김효진 대리 구유빈 대리	070-8895-7741 070-8895-7771	bemate25@kicox.or.kr kyb0401@kicox.or.kr
5	광주첨단	박광민 차장	070-8895-7909	kicox11514@kicox.or.kr
6	전남여수	이유진 차장	070-8895-7991	clarks80@kicox.or.kr
7	대구성서	정봉기 대리	070-8895-7752	orca13@kicox.or.kr
8	울산미포	노재석 대리	070-8895-7697	ryoma0618@kicox.or.kr
9	부산명지녹산	김현서 차장 김지훈 차장	070-8895-7873 070-8895-7858	agatham@kicox.or.kr kic0312@kicox.or.kr
10	전북군산	김후남 과장	070-8895-7968	hibarhn@kicox.or.kr
11	충북청주	이규석 차장	070-8895-7641	kslee@kicox.or.kr
12	충남천안	김철희 차장	070-8895-7611	evil6345@kicox.or.kr
13	전남대불	조정현 과장	070-8895-7942	smileface2@kicox.or.kr
14	대전	김철희 차장	070-8895-7611	evil6345@kicox.or.kr
15	경북포항	정재필 대리	070-8895-7601	jjp0913@kicox.or.kr
16	전남광양	이유진 차장	070-8895-7991	clarks80@kicox.or.kr
17	인천주안부평	김성욱 차장	070-8895-7465	nova9100@kicox.or.kr
18	부산신평장림	김현서 차장	070-8895-7873	agatham@kicox.or.kr
19	강원후평	강정아 차장	070-8895-7346	dodose80@kicox.or.kr
20	전북전주	김후남 과장	070-8895-7968	hibarhn@kicox.or.kr
21	경남사천	이남영 대리	070-8895-7354	dlskadud63@kicox.or.kr

## □ 접수처

번호	구분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1	경기반월시화			
2	경남창원			
3	인천남동	윤혜원 차장	070-8895-7370	msyoon@kicox.or.kr
4	경북구미			
5	광주첨단			
6	전남여수			
7	대구성서			
8	울산미포	김근욱 대리	070-8895-7218	gw9579@kicox.or.kr
9	부산명지녹산			
10	전북군산			
11	충북청주			
12	충남천안			
13	전남대불	송수진 대리	070-8895-7363	1jin010@kicox.or.kr
14	대전			
15	경북포항			
16	전남광양			
17	인천주안부평			
18	부산신평장림	유수현 대리	070-8895-7069	shyu@kicox.or.kr
19	강원후평	ㅠㅜ건 네니	070-0035-7009	
20	전북전주			
21	경남사천			

# 9 유의사항

#### □ AX자문단

- 전담기관은 AX자문단을 구성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에 대해 자문을 통해 정책 방향과 부합하도록 과업내용 및 성과지표를 보완할 수 있다
- o AX자문단은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 □ 인프라 활용 및 지원

-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인프라(건물, 장비 등)는 스마트그린 거점산단또는 연계산단 내에 위치해야 한다
- ※ 전담기관은 평가를 통해 접근성·타당성·공공성 등이 인정되면 산단 외 구축을 승인할 수 있다
- 기구축된 스마트그린산단촉진사업의 성과물(시설, 장비, 네트워크등)과의 연계 및 활용방안 필수로 제시하여야 한다

## □ 사업종료 후 유지운영 방안 및 비즈니스 모델 제시

- 구축된 성과물의 자립화 방안과 비즈니스모델을 제시하고, 수익구조및 수익금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산단 환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비즈니스모델의 수익구조에 대한 경제성분석을 기반으로 수익금 활용 방안 및 자립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 □ 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

- o 스마트그린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및 운영 사업을 통해서 구축한 성과물은 수행기관의 소유로 한다
- 스마트그린산단 AX 실증산단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성과활용기간은 5년
   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세부관리지침 제36조(성과활용 보고 및 성과분석)에 따라 성과활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 □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고 성과활용기간동안 활용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중 수익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 성과활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금은 최소한의 유지·운영 비용을 제외하고, 산단 입주기업 지원 및 AX 확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 □ 공공목적의 데이터 제공 의무

- 사업으로 확보되는 데이터는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동소유이며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까지 전담기관 요청 시, 전담기관이 지정한 시스템에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전담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행기관은 산단 간 인프라의 기술적 연계성 및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사업기간 및 성과활용기간 내 상호운용성 테스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 협약위반 및 문제과제에 대한 조치

- 선정된 기관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사업수행 중 문제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제재조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다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사업에 참여 불가

### □ 보증보험 가입

○ 수행기관(중소·중견기업에 한함)은 협약체결 시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정부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를 제출하 여야 하며 보험료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매칭금으로 산정 가능) 수행기관 중 출연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등의 서류제출이 어려운 수행기관은 본 사업에 참여 불가

#### □ 사업비

- 컨소시엄 내부 거래 및 관계회사(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을 출자한 기관)에 사업비 집행 불가
- ㅇ 본 사업은 연구수당 계상 불가
- ㅇ 본 사업은 기술료 비징수 사업임
- o 정부출연금은 사무실 임차, 임대, 인테리어, 부지매입, 보증금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지방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계상하 여야 하다
- o 이월금은 재이월 될 수 없으며, 이월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행기관에 있다

#### □기타

- ㅇ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제안요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안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입주기업에 별도의 이익을 요구할 경우 문제 과제로 판단하여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